

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[] 인증
[]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일	처리기간	60일		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	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		
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				
	업종					
	규모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
사무소 소재지	본사					
	사업장					
조직 형태	[] 「상법」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[]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[]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[]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					
현황	자본금(억원)	종업원 수(명)		매출현황 (최근 3년간)	연도	매출액(억원)
		정규직	임시직		2025년	
					2024년	
					2023년	

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·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([] 인증 [] 인증 유효기간 연장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1. 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·인력 보유 현황 1부 2. 문화예술후원 실적 1부 3.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1부 4.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1부(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문화체육관광부